

공정위,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

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하도급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분쟁의 발생요소를 제거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확대해나가기로 함에 따라 지난 10월 13일(화) 건축설계, 소프트웨어개발,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설자재 등 4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하고 이와 함께 현재 사용중인 건설, 자동차, 전자, 조선, 기계, 전기 및 섬유의 7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관련단체 및 기관의 협의를 거쳐 건축설계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제정하고, 건설, 기계, 섬유 등 3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관련업계에 동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였으며, 소프트웨어 개발, 자동차, 전자 등 나머지 7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10월중에 제·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.

다음은 이번에 새로 제·개정된 4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이다.

건축설계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주요 내용

- ▶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시 수령증을 교부하도록 하고, 그 검사결과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
 -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
- ▶ 대금은 10일 이내에 지급하되 6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,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이자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부담
 -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할인율에 의한 어음할인료를 부담
- ▶ 수급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아닌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호

- ▶ 계약해제시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이행의 최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계약해제권의 행사요건을 강화
- ▶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상호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일방적·자의적 해석을 사전에 방지

< 관련단체 현황 >

'98. 8. 31. 기준

구분	단체명	회원사수
원사업자	대한건축사협회	5,346개사
수급사업자	한국기술사회	306개사(건축설계관련)
원·수급사업자	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	1,121개사 (대기업:102, 중소기업:1,019)

건축설계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 내용

- ▶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에 의한 대급조정을 받은 경우 법정기간 내에 조정·지급토록 의무화

-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
-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

공정위업무활동

- ▶ 하도급법 등에 의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도 계약이행보증을 면제도록 명시
- ▶ 공사기성분 및 준공분에 대한 감사의 기준 및 방법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장하도록 명시
- ▶ 수급사업자의 공사이행지체시 정당한 지체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
 -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재료를 늦게 공급하여 공사이행이 지체된 경우, 종전에는 수급사업자가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정당한 지체사유로 인정
- ▶ 수급사업자를 위해 원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

을 확대

- 종전에는 원사업자가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과 같이 관계법령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으로 확대

< 관련단체 현황 >

'98. 8. 31. 기준

구분	단체명	회원사수
원사업자	대한건설협회	4,038개사
수급사업자	대한전문건설협회	19,687개사
원·수급사업자	한국전기공사협회	10,050개사
	한국전기통신공사협회	3,530개사
	한국소방설비협회	2,000개사

섬유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 내용

- ▶ 납품물품 검사시 검사기준 및 방법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명시
- ▶ 원사업자의 부당반품금지조항 신설
 -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반품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, 부당반품에 해당하는 행위 명시

-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

- ▶ 수급사업자의 사급자재 수령시 수령절차의 명확화
 -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사급자재를 수령하는 경우 「신속하게 검사」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「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」 신속하게 검사토록 함으로써 수령시 분쟁요인을 해소

<부당반품행위>

-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
- 감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
-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

< 관련단체 현황 >

'98. 6. 30. 기준

구분	단체명	회원사수
원사업자	한국섬유산업연합회	한국화섬협회 등 29개 단체, 약 6000개사
수급사업자	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	1,970개사

기계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주요 내용

- ▶ 원사업자가 귀책사유로 납품이 연기되어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

<관련단체 현황>

'98. 6. 30. 기준

구분	단체명	회원사수
원사업자	한국섬유산업연합회	816개사
수급사업자	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	1,558개사